

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】

영 주 시

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의안 번호	1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ii . . .

제출자 : 영주시장

1. 제정이유

지역주민에게 포괄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,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동 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자문기능을 수행함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주민,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,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(안 제3조)
- 다.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라.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(안 제6조)
- 마.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(안 제8조)

3. 제정조례(안) : 덧붙임

4. 참고자료 : 덧붙임

- 가. 관련법령 반체 1부
- 나. 입법예고 결과 1부

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2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 4.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지역주민
2.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
3. 보건의료관련 전문가
4. 관계 공무원

제4조(임기)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등) 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지역보건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제8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 (발췌)

【지역보건법 시행령】

제2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지역보건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2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1. 지역주민
2.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
3. 보건의료관련전문가
4. 관계공무원

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입 법 예 고 결 과

- 조례명 :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안)
- 예고방법 : 영주시보 제256호 (2000년 10월 11일)에 게재
- 예고기간 : 2000년 10월 11일 ~ 2000년 11월 5일(25일간)
- 의견제출여부 : 없음

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의 안

- 의안번호 : 제146호
- 의 안 명 :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안)
- 해당부서 : 보건소 보건사업과

2. 제안이유

지역주민에게 포괄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는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조사,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동 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자문기능을 수행함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지역주민,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,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라.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(안 제6조)
- 마.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-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안)의 주요내용은
 -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,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,
 -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,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,
 -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, 안 제6조는 회의소집,
 -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지정, 안 제8조는 수당 및 여비지급,
 - 안 제9조는 운영세칙을 규정하는 내용임.
-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 -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며,
 -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, 시행, 평가 및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0. 11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